공영차고지관리규정

제정 2003. 8.11 규정 제432-2호
개정 2006. 1. 9 규정 제540호
2006. 3.29 규정 제559호
2016. 7.12 규정 제821호
2016.11.18 규정 제839호
2017. 4.26 규정 제89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공영차고지의 관리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리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직영관리"라 함은 공단이 건축물, 전기 및 기계설비 등 주요 시설물을 유지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임대관리"라 함은 입주업체가 주유시설, 세차시설, 공동사무실, 정비고, CNG 충전소 등 부대시설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관리범위) 공단은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한다.

1.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항
2. 공단 직영관리 기기 및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
3. 임대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

[전문개정 2016.7.12.]

제5조(지도・감독범위) 입주업체가 운영・관리하는 임대시설물 관리 지도・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련법규가 정한 인・허가, 신고사항, 법정관리자 선임여부
2.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화재예방대책 수립 여부
3. 임대시설물 정상적 가동여부
4. 임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(본호개정 2016.7.12.)

제6조(현장관리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공단 직원 또는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한다.

1. 각종 기기의 운전점검 및 정비보수
2.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
3. 청결 및 쾌적한 환경유지
4. 입주업체에 대한 계도 및 질서유지

제7조(사용절차) 공영차고지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설사용계약) ①공영차고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단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공단이 정하는 기한까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시설사용 계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
2. 사용목적물
3. 보증금 및 사용료
4.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

제9조(시설사용료) ①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은 부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, 시설물의 경우에는 매3년마다 실시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('06.1.9)

②입주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공단에 예치하여야 한다. 단, 계약체결시 연간사용료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선납 후 납부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담보를 면제한다.('06.1.9)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보증금은 공단이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채권회수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. ('06.1.9)

1. 사용료 체납액 및 연체료, 관리비
2. 대집행비용
3. 손해배상

④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부과금액중 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
제10조(관리비) ①관리비는 월단위로 고지하여 납부토록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②관리비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5조 제3항에 준하여 가산된 연체료를 부과 징수한다.

③관리비의 내역서는 관할 관리소에 비치하여 공개하며 입주업체의 청구에 따라 열람 및 발급한다.

④관리비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총 부과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.

제11조(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) 입주업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(2006.3.29 개정)

1. 사용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2. 사용목적물내 새로운 시설물 설치 또는 형태 변경행위
3. 전등 및 전원의 신설 및 이전, 전압의 변경, 전화가설, 가스, 전기, 수도 등의 신설, 증설, 이전, 변경, 수선행위
4. 공단이 시설한 외의 시설물 등의 고정성 기계장치 장식 등의 설치행위
5. 사용목적물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, 기타 표지 부착행위
6. 기타 시설물의 신설수리 및 변경행위

제12조(점검 및 위반시 조치) ①공단은 제반 준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조치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반하는 등 시정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을 해

지할 수 있다.

제13조(화재보험가입) 공단은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, 입주업체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입주업체에게 부과한다.
[전문개정 2016.11.18]

제14조(시설관리 및 청소) ①정비·주유·세차시설의 운영관리는 입주업체 중 대표 운영업체가 운영관리를 책임지며, 대표 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입주관련 법규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필히 이행하여야 하고 화재예방,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내외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.
③사용시설 내외 청소는 입주업체가 하여야 하며, 쓰레기 수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수거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('06.1.9 본조신설)

제15조(차량주차의 제한) ①공영차고지 내에는 업무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한다.
②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영차고지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시설관리) 관리소장은 차고지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한다.

부 칙(2003. 8. 11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. 9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3.29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7.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1.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6)(정관 제85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<별표 1>

시설사용계약 구비서류 목록

구 분	구 비 서 류
사용신청서	(1) 사용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)
계약체결시	(1) 법인등기부 등본 1부 (2) 사용인감도장 (3)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

<별표 2>

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

비 목	부 과 기 준	부 과 액 산 출	비 고
전 기 료	㎾당 단가 ×전력사용량	· 총비용/총계약대수×업체별 계약대수 · 계량기 설치시설은 실사용량 부과	일반용 및 산업용 포함
상하수도료	㎥당 단가 ×취수사용량	· 총비용/총계약대수×업체별 계약대수	
냉·난방비	㎥당 단가 ×가스사용량	· 총비용/사무동면적×업체별 사무동 임대면적	실난방 면 적
정화조청소	오물발생량 ×처리비용	· 총비용/총계약대수×업체별 계약대수	
방역소독비	계약대수	· 총비용/총계약대수×업체별 계약대수	
환경개선 부 담 금	계약대수	· 총비용/총계약대수×업체별 계약대수	
화재보험료	임대면적	· 총비용/임대면적×업체별 임대면적	
기 타	-	· 계약당사간 협의사항	

※ 임대면적 : 전용면적 + 공용면적
총 비 용 :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

<별지 제1호 서식>

<table>
<tr><td colspan="6">(　　권역)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</td><td>처리기간
7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
청
인</td><td>업 체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대 표 자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노 선 수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면허대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법정차고지면적(㎡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사무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용목적</td><td></td><td>사용구분</td><td>(전용차고), (일부차량주차)</td><td>주차대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용기간</td><td colspan="5">년　월　일 ~　년　월　일(　년　월)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부 대 시 설 사 용(해당란에 사용면적(㎡)표시)</td></tr>
<tr><td>사 무 실</td><td>휴 게 실</td><td>주유시설</td><td>세차시설</td><td>정 비 고</td><td colspan="2">기　타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(주)　　대표자　　(인) 서명날인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</td></tr>
</table>